

# 2022

## 인력분야 정책설명회



# 목 차

- 1 인력 양성
- 2 인력유입 촉진
- 3 기타 참고 자료



1

「인력 양성」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산업 각 분야에 소질을 가진 학생을 발굴하여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취업 연계 지원

## 대상



중소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등  
차별화된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 규모



345억원 230개 특성화고  
※ '21년도 215개교, 8,693명 양성, 취업률 65.1%

## 내용

- **교육지원** : 교수학습자료 개발, 프로젝트형 수업, 진로지도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
- **취업지원** : 중소기업 채용 협약 방식의 「취업(산학)맞춤반」 지원
- **산학연계** : 기업체CEO, 해당분야 기능장 등 외부 전문강사 및 산학겸임교사 활용하여 채용 연계지원

### ◆ 취업(산학)맞춤반이란?

: 학교-학생-중소기업 간 취업확정 협약을 맺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 대구경북지역 참여학교 현황('21년도 기준)

지역	참여학교	비고
대구(13개교)	경북공고, 경북여상, 경상공고, 대구공고, 대구달서공고, 대구과학기술고, 대구여상, 상서고, 대구전자공고, 대구제일여상, 대중금속공고, 영남공고, 조일고	
경북(11개교)	경북기계금속고, 경북드론고, 경북하이텍고, 경주여자정보고, 경주정보고, 금호공고, 구미정보고, 신라공고, 영주동산고, 영천전자고, 포항흥해공고	

## 참여방법

- (학교) 신규 참여기관은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업) 특성화고와 협의하여 프로그램 참여 및 졸업예정자 채용협약 가능
  - \*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상시모집)

## 참여기업 혜택

- 맞춤형 인재 확보
- 병역지정업체 신규지정(가점7)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 1순위 자격요건 부여 등

## 신청

- 공고일정 : '22. 1월 예정
- 문의처 : 대경중기청 성장지원과(053-659-223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055-751-9862, 9865)



#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계약학과)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학위과정 (전문학사~박사)을 대학에 설치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채용예정자 포함) 역량 향상 및 장기재직 유인

## 대상

### 대 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 기 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학 생

재교육형 :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재교육형 동시채용 : 학기개시일 기준 해당기업 취업 예정자  
채용조건형 : 학기개시일 기준 협약기업 채용약정 체결한 자

## 규모

- ('22년) 78개 학과, 양성인원 2,020명, 예산 133억원 (※ '21년도 70개학과, 2,065명 양성)  
- 참여대학 명단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or.kr/sanhakin>) > 정보마당 > 참여학교현황

## 내 용

### 기 업·학 생

재교육형 : 전문학사·학사는 등록금의 85%, 석·박사과정은 65% 지원  
재교육형 동시채용 / 채용조건형 : 등록금 100% 지원

\* 재교육형 중견기업 참여시, 매출액 3천억원 미만 (40% 지원), 3천억원 이상(지원 없음)

### 대 학

학과 운영비 학기당  
35백만원 지원

## 의무근무기간

- 재교육형 : 졸업 후 1년
- 재교육형 동시채용 및 채용조건형 : 졸업 후 2년



#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계약학과)

## 대구·경북지역 계약학과 현황 ('21년도 기준)

연번	교육유형	주관대학	학과명	학위	비고
1	재교육형	경일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석사	
2	재교육형	대구대학교	스마트융합시스템공학과	석사	
3	재교육형	대구대학교	IT융합학과	학사	
4	채용조건형	계명문화대학교	스마트환경과	전문학사	
5	채용조건형	계명대학교	전기전자융합시스템공학과	석사	'22.2월 사업종료

## 참여기업 혜택

- 근로자 역량 향상, 장기재직(졸업 후 의무근무 1~2년)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인재육성형 기업지정 신청시 가점 부여
- 정책자금 신청시 금리우대
- 성과공유 기업지정 신청시 가점 부여 등

## 신청

- **공고일정** : (봄학기) 11~2월, (가을학기) 6~8월 - 주관대학 모집요강에 따름
- **문의처** : 대경중기청 성장지원과(053-659-223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18, 9876)



#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기술사관)

" 직업계고 + 전문대" 연계 교육과정(최대 4년)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채용지원

## 대상

### 사업단

전문대 (1개) + 직업계고 (N개)  
컨소시엄으로 사업단 구성

### 중소기업

사업단을 운영하는 전문대와  
채용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학생

사업단 소속 직업계고 재학생 중  
2~3학년 진학 시 선발된 학생

## 규모

- ('22년) 10개 사업단, 양성인원 1천명, 예산 32억원(대구경북지역 1개 사업단 : 영남이공대 - 영남공고)  
※ '21년도 9개 사업단(전문대9+특성화고17), 1,172명 양성

## 내용

- **사업단** : 현장 맞춤형 연계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단별 3억원 내외)
- **중소기업** : 기술사관 프로그램 (교육과정 설계, 현장체험, CEO강의, 인력채용) 참여 가능, 병역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 신규 선정 시 평가 우대 (+10점)
- **학생** : 직업계고 2~3학년부터 대학 졸업시까지 최대 4년간 교육받은 후 협약기업으로 취업, 산업기사 취득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대체복무 가능 (1순위 배정, 협약기업이 병역지정업체인 경우)

## 신청

- 중소기업 사업 참여는 주관 전문대와 개별적으로 협약체결 후 진행 가능
- **문의처** : 대경중기청 성장지원과(053-659-223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28, 9875)





2

「인력유입 촉진」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국민·민영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

## 대상

- 중소기업에 5년 이상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일반유흥주점업 등은 제외, 부동산업의 경우 '21.6.9부터 지원대상 포함

## 규모

- 주택공급규칙 (국토부령)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85㎡이하 (분양가격 9억원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내에서 기관추천 유형으로 공급 (\* '21년도 특별공급 추천 2,492명)

## 내용

### 임대



중소기업 재직여부 및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여 확인서 발급

### 추천



중소기업 재직기간 및 각종 정책적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사업주체에 추천

## 신청

- 신청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접수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신청·접수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044-204-7448),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택공급 담당자

# “내일채움공제(일반형)” 사업안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 대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상 지원업종 영위 중소기업
- 중소기업 근로자 (핵심인력\*)  
\* 중소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기업 대표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요건

### 가입 기간



5년 이상

### 공제 납입금



매월 34만원 이상을 근로자와 기업이 1 : 2이상 비율로 적립

### 최소 가입금액



5년간 2,000만원 이상

※ '22년 15억원, 1만명 신규가입 지원 ('21년도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포함) 신규가입자 수 : 42,020명))

## 내용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 (필요경비) 인정 및 세액공제 (납입금액의 25%)
- **핵심인력** : 5년 만기금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 (중견기업 30%)

## 신청

- **신청** : 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sbcplan.or.kr](http://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및 중진공 지역본(지)부 방문, 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 콜센터 1588-6259

# 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

## 가입 대상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특별법 상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上 지원업종 영위기업

### \* 가입 제한 기업

- 일반유흥·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 휴폐업, 세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기업 등

핵심인력 : 직무기여도가 높아 기업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핵심인력** (학력, 자격, 경력 등 제한 없음)

- 5년 이상 장기재직이 가능한 근로자(만기 시 재직여부 확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제외
- 기업의 대표자, 실질 기업주 제외

## 가입 금액

5년간 최소 **2,000만원** 이상 납입  
(예시 : 매월 핵심인력 10만원, 중소기업 사업주 24만원)

\*적립비율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이상]의 비율**로 납부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안내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일정기간 적립하고  
공제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

## 대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상 지원업종 영위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청년 근로자(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

## 요건

### 가입 기간



5년 ('22년까지 한시 사업)

※ '22년 2,855억원, 2만명 신규가입 지원

### 공제 납입금



5년간 3,000만원 이상

- 청년 12만원/월 = 총 720만원(5년 납입시)
- 기업 20만원/월 = 총 1,200만원(5년 납입시)
- 정부 = 총 1,080만원(적립시점별 금액 상이)

## 내 용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 (필요경비) 인정 및 세액공제 (납입금액의 25%)
- **핵심인력** : 5년 만기금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 (중견기업 30%)

## 신 청

- **신청** : 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sbcplan.or.kr](http://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및 중진공 지역본(지)부 방문, 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 콜센터 1588-6259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

## 가입 대상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특별법 상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상 지원업종 영위기업

\* 가입 제한 기업

- 일반유흥·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제외대상(비영리법인 등)

- 휴폐업, 세금(국세) 체납기업 등

**핵심인력 :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 중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핵심인력(군복무 기간 합산 최대 39세 이하)**

- 5년 이상 장기재직이 가능한 근로자(만기 시 재직여부 확인)

\* 가입 제외 대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제외

- 자산형성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예시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 통장 등]

- 대표자(개인기업)·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법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및 자매 등 자매

## 가입 금액

**청년근로자 12만원 이상, 기업 20만원 이상(정액적립방식) \* 차등적립가능**

**정부는 1개월 적립 후 6개월 단위로 3년 동안 1,080만원 적립 (총 7회)**

\* 1개월, 6개월 : 120만원 / 12개월, 18개월 : 150만원 / 24개월, 30개월, 36개월 : 180만원

#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사업안내

재직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일정기간 적립하고  
공제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

## 대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상 지원업종 영위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중,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 후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

## 요건

### 가입 기간



3년

※ '22년도 0.5만명 신규가입 지원

### 공제 납입금



3년간 1,000만원 이상

(매월 근로자, 기업 각각 14만원 납입)

## 내용

- **적립금** : (근로자) 3년간 504만원 적립 (월 14만원 x 36개월)  
(기업) 3년간 504만원 적립 (월 14만원 x 36개월)

## 신청

- **신청** : 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sbcplan.or.kr](http://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및 중진공 지역본(지)부 방문, 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 콜센터 1588-6259

# 중도해지시 부금처리 방법

## 공제 계약 중도해지

**근로자  
귀책사유**  
(자진퇴사 등)

- ① 청년 근로자 부담금 → 근로자
- ② 기업 부담금 → 기업
- ③ 정부지원금 = 1,080만원\*(가입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  
(청년재직자형)

(단,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 미지급)

**기업  
귀책사유**  
(폐업, 부도, 권고사직 등)

- ① 청년 근로자 부담금 → 근로자
- ② 기업 부담금 → 근로자
- ③ 정부지원금 = 1,080만원 이내에서 계약유지  
(청년재직자형) 기간별 환급액은 상이함  
36개월 이상 유지시 전액지급

★ 가입 후 12개월 이내 해지시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정부지원금 미지급 ★



# 내일채움공제 제도 비교(요약본)

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구분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재직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現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만34세 이하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배출 중소(중견)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근로자
가입기간	5년이상	5년	3년
적립액	<u>5년간 2,000만원 이상</u>	<u>5년간 3,000만원 이상</u> (청년 720+기업 1,200+정부 1,080)	<u>3년간 1,000만원 이상</u> (근로자 504만원+기업 504만원)
월납입액	핵심인력 : 기업 = 1 : 2(이상)	청년재직자 : 기업 = 12만원 : 20만원 (정부지원금 별도 적립)	핵심인력 : 기업 = 14만원 : 14만원
시행일	2014. 08. 21	2018. 06. 01	2021.10.18
사업기간	계속사업	한시사업(22말 종료 예정)	계속사업

# 주요 변경사항 정리

## 1. 가입대상 확대

구분	적용	기타
부동산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21.6.9~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21.4.21~	-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1.10.21~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 2. 공제사업 추가

기존	추가
(일반)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21.10.18~)



3

「기타 참고 자료」

## 참고1. 내일채움공제 금리

공제  
금리

연 1.78%(연 복리식, 2022년 1/1분기 기준)

※ 공제금리는 매 분기별 변동 가능(분기별 금리 공지)

## 참고2. 내일채움공제 자산형성 사업 비교

기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고용부	고용부
사업명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
시행시기	'14년8월	'18년6월	'21년10월	'16년7월
가입요건 (청년)	근로자 (나이, 재직기간 무관)	재직 청년 (15~34세, 6개월 이상 재직)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근로자	신규취업청년 (15~34세, 정규직 채용 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요건 (기업)	중소·중견기업			5인 이상 중소기업 (일부 5인 미만)
정부지원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적립구조	2자 적립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매월 34만원 이상) → 5년 만근시 <b>2,000만원 이상</b>	3자 적립 [청년] 5년 720 [정부] 3년 1,080 [기업] 5년 1,200 → 5년 만근시 <b>3,000만원 이상</b>	2자 적립 만기근로자 : 기업 = 1 : 1 (각각 월 14만원씩 정액적립) → 3년 만근시 <b>1,000만원 이상</b>	3자 적립 [청년] 2년 300 [정부] 2년 600 [기업] 2년 300 → 2년 만근시 <b>1,200만원 이상</b>

※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은 '18년6월~'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 참고3. 내일채움공제 유형별 세액공제 적용 예시

#### □ [사례1] 공제가입 핵심인력이 특수관계인에 해당 될 경우

※ (예시) 기업기여금으로 매달 5일에 철수(일반직원)는 月30만원, 영희(대표자의 배우자)는 월 50만원을 미납 없이 납입

구분	2016년	2017년
철수(일반직원)	360만원	360만원
영희(대표이사의 배우자)	600만원	600만원
합 계	960만원	960만원

#### □ '16년도와 '17년도에 해당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납입비용은?

- '16년도의 경우, 기업기여금 총액(960만원)이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해당 납입비용
  - '17년도의 경우, 총 기업기여금 960만원에서 법시행일('17.3.17) 이후 특수관계인에 대해 납입한 금액(4-12월분, 450만원)을 제외한 기업기여금인 510만원이 납입비용에 해당됨.
- ⇒ ex) 세액공제 금액 : 510만원 X 25% = 127.5만원(해당 연도 총 발생액 기준)  
 \* 해당 연도 총 발생액 기준 (25%) 또는 전년대비 증가 발생액 기준(50%) 선택 가능

### 참고3. 내일채움공제 유형별 세액공제 적용 예시

#### □ [사례2] 핵심인력이 중도해지할 경우

※ (예시) 기업기여금으로 철수, 영희, 민수에 대해 月30만원을 미납 없이 납입  
(법 시행일 '17.1.1일로 가정)

구분	2017년	2018년	비고
철수(月 30만원)	360만원	360만원	
영희(月 30만원)	360만원	360만원	
민수(月 30만원)	360만원	180만원	해지환급금 : 540만원
합계	1,080만원	900만원	

□ 민수가 '18년 6월까지 납입하고 중도해지하였을 경우, '18년도의 일반연구·인력 개발비 해당 납입비용은?

- '18년도 총 기업기여금인 900만원에서 민수의 중도해지 환급금액 540만원을 차감한 360만원만 납입비용에 해당됨.

⇒ ex) 세액공제 금액 : 360만원 X 25% = 90만원

• 해당 연도 총 발생액 기준 (25%) 또는 전년대비 증가 발생액 기준(50%) 선택 가능

# 참고4. 내일채움공제 만기 및 해지시 수령금액 예시

## ① 5년 만기 시

주 체	납부금액	합 계
기 업	20 x 60개월	1,200
직 원	12 x 60개월	720
정 부	3년간 총 7회	1,080

## 기업/직원 혜택

기 업	1,200 투자	1,200 비용인정 25% 세액공제 직원 5년 장기재직
직 원	720 투자	3,000 수령 연복리 이자 근로소득세 50%감면

## ④ 12개월 가입후 해지(기업사유)

주 체	납부금액	합 계
기 업	20 x 12개월	240
직 원	12 x 12개월	144
정 부	1~3회차 적립	390

## 기업/직원 혜택

기 업	240 투자	240 비용인정 25% 세액공제
직 원	144 투자	774 수령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지침 제24조2항에 의거하여, 계약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청년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 정부에 반환함.



# 참고5.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수령금액 예시

## ⑤ 18개월 가입후 해지 (기업사유)

주체	납부금액	합계
기업	20 x 18개월	360
직원	12 x 18개월	216
정부	1~4회차 적립	540

### 기업/직원 혜택

기업	360 투자	360 비용인정 25% 세액공제
직원	216 투자	1,116 수령

## ⑥ 24개월 가입후 해지 (기업사유)

주체	납부금액	합계
기업	20 x 24개월	480
직원	12 x 24개월	288
정부	1~5회차 적립	720

### 기업/직원 혜택

기업	480 투자	480 비용인정 25% 세액공제
직원	288 투자	1,488 수령

## ⑦ 30개월 가입후 해지 (기업사유)

주체	납부금액	합계
기업	20 x 30개월	600
직원	12 x 30개월	360
정부	1~6회차 적립	900

### 기업/직원 혜택

기업	600 투자	600 비용인정 25% 세액공제
직원	360 투자	1,860 수령

## ⑧ 36개월 가입후 해지 (기업사유)

주체	납부금액	합계
기업	20 x 36개월	720
직원	12 x 36개월	432
정부	1~7회차 적립	1,080

### 기업/직원 혜택

기업	720 투자	720 비용인정 25% 세액공제
직원	432 투자	2,232 수령

## ⑨ 36개월 이후 해지 (기업사유)

주체	납부금액	합계
기업	20 x 납입개월	A
직원	12 x 납입개월	B
정부	1~7회차 적립	1,080

### 기업/직원 혜택

기업	A 투자	A 비용인정 25% 세액공제
직원	B 투자	A+B+1,080 수령

## ⑩ 직원사유 해지 시 (12개월이후)

주체	납부금액
기업	전액 기업회수
직원	전액 직원회수
정부	18 x (적립월수 - 1)

### 기업/직원 혜택

기업	가입기간 내, 중기부 49개 사업 가점
직원	18 x (적립월수 - 1) 수령

# 감사합니다

인력분야 정책설명회